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2026년 3월 12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10 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2-1”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직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다만,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제5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질병휴직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병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제21조 제2항의 별표2-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승진후보자 우선순위자 결정 기준(제21조 관련)

통합정원 직급	그 외 직급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연장자	3. 연장자

제22조 별표2-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2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승진 예정 인원	승진심사 대상 범위
2명 이하	4배수
3명 이상	3배수

부 칙

이 내규는 2026. 3. 1.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실
입 안	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자	담당자 성명 (전 화)	현 진 환 (3 9 0 - 7 6 4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p> <p>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u></p> <p>1. <u>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u></p> <p>2. <u>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u></p> <p>3. <u>연장자</u></p>	<p>제21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p> <p>② ----- -----<u>“별표 2-1”에</u>----- ----- -----.</p>
<p>제22조(직원의 승진)</p> <p>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직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u>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2-1에</u>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p>	<p>제22조(직원의 승진)</p> <p>----- ----- ----- ----- -----<u>결원(다만,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 예정 인원)에</u>----- -----<u>“별표 2-2”에</u>----- -----.</p>
<p>제59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p> <p>① (생략)</p> <p>② <u>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 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p>	<p>제59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질병 휴직자*</u>----- ----- ----- ----- -----<u>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u></p>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병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현 행

[별표 2-1]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2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심사 대상 범위
2명 이하	4배수
3명 이상	3배수

개 정 안

[별표 2-2]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2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승진 예정 인원	승진심사 대상 범위
2명 이하	4배수
3명 이상	3배수

현 행

(신설)

개 정 안

[별표 2-1]

승진후보자 우선순위자 결정 기준(제21조 관련)

통합정원 직급	그 외 직급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연장자	3. 연장자

참고자료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 관련 지침 개정(2026.01.)

현 행	개 정 안
1. 총 칙	
③ 기본원칙	
<p>나. 조직·인력 운영</p> <p>○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u>육아 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u>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p>	<p>○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u>질병휴직자*</u>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u>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u></p> <p>* <u>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병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u></p>